

[] 연료
자동차 []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
[] 촉매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신청자	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사무실	사무실 전화번호
		실험실	실험실 전화번호
	대표자성명	생년월일	
대표자주소			
검사 대상	연료	[] 휘발유, 경유 [] LPG [] 바이오디젤 [] 천연가스, 바이오가스	
	첨가제 용도	[] 휘발유용, 경유용 ([] 연료제조기준 [] 유해중금속 [] 배출가스) [] LPG용	
	촉매제	[] 촉매제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신청자 제출서류	1. 사업자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2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.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.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